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10 선고 2022가단845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성원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 권오석

변 론 종 결 2023. 7. 6.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2021. 3. 2.자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D와 피고 C 사이에 2017. 6.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106,475,402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475,402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와 피고 C 사이에 2017. 6. 2. 체결된 매매계약과 피고들 사이에 2021. 3. 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7. 6. 8. 접수 제382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B은 피고 C에게 같은 등기소 2021. 3. 4. 접수 제248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 ① D(여, E생)는 2006. 11.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9. 16. 매매를 원인으로 F로부터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D 명의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② D와 그의 며느리(D의 아들 G의 부인)인 피고 C은 2006.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2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가등기권자 피고 C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③ 원고는 2009. 2. 9.경부터 같은 해 12. 1.경 사이에 D에게 합계 130,000,000원을 이율 연 12%로 빌려주었다.
- ④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위 법원 2014가합545로 D를 상대로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19. ‘D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즈음 확정되었다.
- ⑤ D와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8. 접수 제38234호로 2017. 6. 7.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2017. 6. 8.) 접수 제38235호로 2017. 6.

2. 매매(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C 명의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⑥ 피고들은 2021. 3.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2. 매매(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D의 손녀(D의 딸 H의 딸)인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B 명의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원고와 같은 D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이에 따른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인 D로부터 수익자인 피고 C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C 명의 이전등기와, 수익자인 피고 C으로부터 전득자인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B 명의 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C 명의 이전등기는 사실상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이 있었던 2006. 11. 28.부터 5년이 지나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된다. 또한 원고의 의뢰를 받은 I 주식회사가 업무를 이관받은 2021. 8. 12.에는 원고가 이 사건 C 명의 이전등기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각 제척기간이 도과된 2022. 5. 9.에야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가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이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한 새로운 대물급부 약정에 기한 것으로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의 채권이 성립되기 전에 이미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C 명의 이전등기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마쳐진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D 명의 이전등기에 관한 매매대금 및 이를 지급하기 위한 대출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으므로 수익자인 위 피고는 채무자

D의 사해의사를 몰랐고, 전득자인 피고 B도 시세차익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 선의이다.

한편 이 사건 C 명의 이전등기 이후 그 전부터 존속하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제1항). 이 때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가 재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이상, 그 원상회복으로서 그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고, 장차 그 가등기가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부활되는지의 여부나 그와 같이 부활되는 가등기에 기하여 그 이전등기의 명의인이 다시 본등기를 경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2) 판단

(가) 사해행위 판단 대상 법률행위

D와 피고 C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C 명의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라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고서 같은 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C 명의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상 매매대금은 105,000,000원인데, 이 사건 C 명의 이전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20,900,000원으로 차이가 큰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데에다가,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C 명의 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에서 사해행위인지 문제가 되는 법률행위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아니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2022. 5. 9. 제기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때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있었던 2017. 6. 2.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또한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 주식회사 및 같은 회사 강릉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원고가 위 2022. 5. 9.로부터 1년 전인 2021. 5. 9.보다 앞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원고와 같은 D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 나아가 채무자 D에게 그러한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즉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¹⁾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는 그가 전득자임을 주장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 B와의 관계에서도 D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취소의 대상이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그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B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닌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D 명의 이전등기 및 이 사건 가등기의 각 성격

가. 이 사건 D 명의 이전등기의 성격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D 명의 이전등기 당시 피고 C와 D는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D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는 2006. 9. 16. 매도인 F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2006. 11.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D 명의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D 명의 이전등기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가등기의 성격

(1) 관련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그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 대물급부의 목적물이 원래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것만으로 그 유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2) 판단

2006. 11. 17. 마쳐진 이 사건 D 명의 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인 점과, 이 사건 가등기의 가등기권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명의신탁자인 피고 C으로 그 등기는 이 사건 D 명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로부터 불과 14일 후인 2006. 12. 1.에 마쳐진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과 증인 D의 증언을 더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명의신탁자인 피고 C의 명의수탁자인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사정과 증거만으로 명의수탁자 D가 자신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 피고 C과의 사이에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는 약정, 즉 새로운 대물급부 약정을 체결하고서 그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인 등기라고 할 것이다.

5. 사해행위의 성부

가. 관련법리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 C 명의 이전등기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것이 아니고, 그와 별개인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기한 것임은 앞서 제3의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5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D는 원고에 대하여 원금만 130,000,000원에 이르는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그 당시 D는 전남 고흥군 J 토지 중 일부 지분과 K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들에 관하여 피고 C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가등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인무효인 등기인바, 그에 따라 그것이 마쳐져 있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채무자 D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D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D는 피고 C와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D 명의 이전등기를 마친 점은 위 제4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와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러한 명의신탁관계 외 다른 법률관계를 맺은 바는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앞서 본 이 사건 가등기의 경우와 같이, 위에서 본 사정 및 증거만으로는 명의수탁자 D가 자신이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 피고 C와의 사이에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는 새로운 대물급부 약정으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C 명의 이전등기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등기원인인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선의 여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수익자인 피고 C와 전득자인 피고 B의 각 악의는 추정되는데,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 피고들이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선의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6.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관련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6. 11. 17. 채권최고액 151,2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6. 2.에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게 남아있었던 사실, 위 2017. 6. 2. 기준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03,524,598원인 사실,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9. 9. 5. 같은 날의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중 위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할 수 없고, 위 남은 부분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은 그와 가까운 위 2021. 3. 2.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과 같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바, 갑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1. 3. 2. 체결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21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할 가액은 106,475,402원(= 210,000,000원 - 103,524,598원, 이는 채권자 원고의 채무자 D에 대한 채권의 원리금보다 작다)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106,475,402원의 범위에서 취소할 것이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남은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승우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파주시 , , ,

경기도 파주시

,

경기도 파주시

, , , , ,

아파트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25층 아파트

1층 414.262㎡ 14층 409.224㎡

2층 414.264㎡ 15층 409.224㎡

3층 414.264㎡ 16층 409.224㎡

4층 414.264㎡ 17층 409.224㎡

5층 409.224㎡ 18층 409.224㎡

6층 409.224㎡ 19층 409.224㎡

7층 409.224㎡ 20층 409.224㎡

8층 409.224㎡ 21층 409.224㎡

9층 409.224㎡ 22층 409.224㎡

10층 409.224㎡ 23층 409.224㎡

11층 409.224㎡ 24층 409.224㎡

12층 409.224㎡ 25층 409.224㎡

13층 409.224㎡ 지하층 410.6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4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94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파주시

대 54056㎡

2.

대 1818㎡

3.

대 4804㎡

4.

대 1880㎡

5. 경기도 파주시

대 1380㎡

6. 경기도 파주시

대 132㎡

7. 경기도 파주시

대 219㎡

8. 경기도 파주시

대 44635㎡

9. 경기도 파주시

대 189㎡

10. 경기도 파주시

대 692㎡

11. 경기도 파주시

대 157㎡

12. 경기도 파주시

대 390㎡

13. 경기도 파주시

대 64㎡

대지권의종류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10,416분의 34.311

1)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이다.